

## 2023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청원경찰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청원경찰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보수 및 복무

#### ①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청원경찰	11명	1. 청사 방문객 출입안내(민원안내) 2. 청사内外 질서유지 3. 청사 인원·차량 출입 단속 4. 청사 중요시설(시설물 포함) 경비 5.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2023년 6월 중(예정)

\* 최종합격자는 수습기간(6개월)을 거쳐 정규 청원경찰로 임용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등에 따름

나. 복무: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청원경찰 취업규칙」 등 준용·적용

###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①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최종(면접)시험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 · 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 ·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부합한 자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 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부합한 자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라. 출입 안내 업무 및 주·야간 교대근무가 임용 즉시 가능한 자

#### 마. 이 외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함

## ② 우대요건      ※ 서류 전형에 적용, 별지 6 참고

- 가. 공인무도단증 소지자(별지 9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참고)
- 나. 직무 관련 자격증(응급구조사 1·2급, 일반경비지도사) 소지자
-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9. 1. 1. 이후 실시 시험만 인정)
- 라. 정보기술,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동일한 항목 내 중복 가점은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③ 가점요건      ※ 시험 단계별 적용, 별지 6 참고

항목	구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만점의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	

- ※ 법정가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와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국가보훈처 대표전화 ☎ 1577-0606)
- ※ 법정가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인 응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 항목별 가점은 가산하되, 동일한 항목 내 중복 가점은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3. 시험 일정** ※ 일정은 감염병 상황,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시험일정(예정일)									
시험 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체력 검정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인성 검사	면접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서류접수	임용일
3. 3.(금) ~ 3. 13.(월)	3. 8.(수) ~ 3. 13.(월)	4. 17.(월)	4. 24.(월)	4. 26.(수)	5. 3.(수)	5. 11.(목)	5. 12.(금)	5. 15.(월) ~ 5. 23.(화)	6월 중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osong.mohw.go.kr>)에서 시험 일정 변경, 시험 장소, 합격자 명단 발표 등 공고할 예정이오니, 수시 접속하여 확인 바람

####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3. 8.(수)~3. 13.(월)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기간 전 미리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3. 3. 13.)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직접 방문 및 택배, 퀵,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봉투 뒷면에 <청원경찰 채용 응시원서 재증> 표기
  - 응시번호는 2023. 3. 17.(금) 18:00까지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2023. 3. 16.(목) 18:00까지 응시번호 미통보 시 채용담당자에게 본인이 직접 접수 여부 확인  
접수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제출 서류      ※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양면인쇄 금지,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응시원서 제출 서류 목록	
공통 ※ ①~⑥ 필수제출 ⑦해당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응시원서(별지1, 1장 작성)</li> <li>② 이력서(별지2, 1장 작성)</li> <li>※ 경력사항 빠짐없이 기재하되,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li> <li>③ 자기소개서(별지3, 2장 이내로 작성)</li> <li>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4)</li> <li>⑤ 공정채용확인서(별지5)</li> <li>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li> <li>⑦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만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 개명사항 표시)</li> </ul>
우대 ※ 해당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대 사항 대상자: 자격증(단증) 사본 혹은 확인(인증)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단증, 한국사 포함) 확인(인증)서 제출 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li> <li>※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2019. 1. 1. 이후 실시 시험만 인정</li> <li>※ 자격증(단증)은 당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li> </ul> </li> </ul>
가점 ※ 해당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정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li> <li>② 사회 형평 가점 대상자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li> <li>-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li> <li>-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li> <li>-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li> <li>-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li> <li>· 부모 또는 배우자(구화 하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li> <li>·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li> </ul> </li> </ul> </li> </ul>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 공고 상 양식(별지1~7)이 아닌 양식 임의 수정,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서류 상 미비한 사항(날인 또는 자필서명 누락 등)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자격증(단증, 한국사 포함) 확인(인증)서 및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발급분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5. 시험 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불가

###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응시원서 제출 여부 및 응시 자격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 후 적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 자격증 사본, 단증 사본, 증명서 등은 원서접수 시 제출해야 서류전형에 반영

### 나. 제2차 시험: 체력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각 종목에서 2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 체력검정 측정 기준표 >

구분	종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불합격)
남자	악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왕복 오래달리기 (회) 77 이상	76~ 72	71~ 67	66~ 62	61~ 57	56~ 52	51~ 47	46~ 41	40~ 35	34 이하	
여자	악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왕복 오래달리기 (회) 51 이상	50~ 47	46~ 44	43~ 41	40~ 38	37~ 35	34~ 32	31~ 28	27~ 24	23 이하	

※ 체력검정의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 체력검정 측정방법 및 유의사항

<b>악력 (kg)</b>	<p><b>&lt;측정 방법&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똑바로 선 채로 양발을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하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을 기록한다.</li> </ul> <p><b>&lt;유의 사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전 비치되어 있는 휴지로 손에 이물질이 없도록 닦고 진행해야 하며, 측정 중 심하게 몸을 움직일 때, 팔을 과도하게 구부릴 때, 악력계가 허벅지에 닿을 때 등은 파울로 처리가 되어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li> </ul>
<b>윗몸 일으키기 (회/1분)</b>	<p><b>&lt;측정 방법&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li> <li>- 양팔꿈치가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고 누울 때 등이 바닥에 닿는 것을 1회로 간주하며,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li> <li>-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li> </ul> <p><b>&lt;유의 사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 도중 머리 뒤에 깍지 낀 손이 풀리거나, 몸을 앞으로 굽힐 때 양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지 않을 때 등은 파울로 처리가 되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li> </ul>
<b>왕복 오래달리기 (회)</b>	<p><b>&lt;측정 방법&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li> <li>- 반대편 라인에 도착한 후 다음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대기한다.</li> <li>-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li> <li>- 신호 간격은 점점 빨라지며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왕복하여 달린다.</li> </ul> <p><b>&lt;유의 사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 반대편 라인에 한발이라도 넘어와야 횟수가 인정된다.</li> <li>- 다음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반대편 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측정은 종료되며, 이때까지 달린 횟수를 기록한다.</li> </ul>

○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실시(면접전형 시 참고),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및 불합격 처리

#### 다. 제3차 시험: 면접전형

- 체력검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실시자에 한해 실시하며 성실성 및 조직 구성원과의 친화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평정요소를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 점수를 냄

####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법정가점(취업지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체력검정 > 서류전형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함

## 6.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	청원경찰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청사 방문객 출입안내(민원안내)</li> <li><input type="radio"/> 청사内外 질서유지</li> <li><input type="radio"/> 청사 인원·차량 출입 단속</li> <li><input type="radio"/> 청사 중요시설(시설물 포함) 경비</li> <li><input type="radio"/>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등</li> </ul>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b>(공통역량)</b>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 마인드(협업 의식), 고객지향 마인드</li> <li><input type="radio"/> <b>(업무이해도)</b> : 직무지식(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 청사방호 개념, 청원경찰의 역할, 상황대응요령 및 상황보고체계</li> <li><input type="radio"/> <b>(직무분야역량)</b> : 출입통제, 보안검색, 민원대응능력 등 문제해결능력</li> </ul>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보안업무규정, 통합방위법, 국가공무원복무 예규, 총기·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지식</li> </ul>
------	--

응시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가 없으며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li> </ul>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공인무도단증 소지자</li> <li><input type="radio"/> 직무 관련 자격증(응급구조사 1·2급, 일반경비지도사) 소지자</li> <li><input type="radi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자</li> <li><input type="radio"/> 정보기술,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li> </ul>
가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법정 가점(취업지원) 대상자</li> <li><input type="radio"/> 사회 형평 가점(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대상자</li> </ul>

##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한 서류 보완 안내는 없으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과 임용 후 호봉획정을 위해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력검정, 면접전형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됩니다.
  - 체력검정 당일 시험장 안에는 응시자, 관계자 외에 외부인에 대하여 일체 출입이 제한되며, 응시자는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체력검정 당일 핸드폰은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하며, 체력검정 종료 후 배부합니다.
  - 체력검정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운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 과정에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체력검정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정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검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갑, 보조 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 체력검정 시 복장(신발) : 자유선택(단,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불가)
- 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전형 중에는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허가 없이 무단 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의 기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자격검증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는 면접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공고 시 제출서류로 공고할 예정으로 면접 당일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당일 면접 전 핸드폰은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하며, 면접 종료 후 배부합니다. 면접시험 당일 핸드폰 수거 거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 과정상 부적격(응시자격 부적격, 건강검진 종합결과 유질환자(중대질환), 임용 미승인, 총기 미허가, 임용일 미출근 등)한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수습기간(6개월)을 거쳐 정규 청원경찰로 임용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전형 세부 계획은 공고 예정일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시험 공고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 관련: 지원총괄팀 청원경찰 채용 담당(☎ 043-719-0021)
- 직무 관련: 지원총괄팀 청원경찰 담당(☎ 043-719-0027)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를 기관으로 제출 바랍니다.

\* 반홷新청서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43-719-0021)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3년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인/서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귀하

<b>사진</b>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영어													
	<b>주민등록번호</b>							-									
<b>전자우편 (E-mail)</b>	<b>응시 분야</b>	청원경찰	<b>연락처</b>	휴대전화													
				비상 연락처													
<b>가점사항</b> ※ 해당자는 필수 기재	<b>구분</b>	<b>가점비율</b> ※ 해당부분 체크	<b>증서번호</b>		<b>인정(발급)기관</b>												
<b>법정가점 (취업지원) 대상자</b>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5%																
	<b>사회형평 가점 대상자</b>	<input type="checkbox"/> 10%(장애인)															
		<input type="checkbox"/> 5%(그 외)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를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자필 또는 워드)하여야 하며,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미기재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진: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text{cm} \times 4\text{cm}$ ) 혹은 여권( $3.5\text{cm} \times 4.5\text{cm}$ ),  
탈모 상반신 사진 부착
2.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채용담당자 기재)
3. 성명: 한글, 한자 및 영어 성명을 정자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정자로 기재
5. 응시직종: ‘청원경찰’ 기재되어 있음
6. 연락처: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연락 가능한 번호(비상연락처) 기재
7. 전자우편: 유효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
8.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우편물 수령 등)
9. 가점사항: 해당자 필수 기재, 본인의 가점비율 체크, 증서번호, 인정(발급)기관 반드시 기재

【별지 2】

※ 반드시 날인 또는 자필 서명 후 제출

# 이력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청원경찰	성명

나. 우대 및 경력사항				
공인 무도 단증	단증(무도)명	단수	발급번호	발급기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시험일자	등급	인증번호	시행기관
그 외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 검정기관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인/서명)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를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자필 또는 워드)하여야 하며,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미기재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채용담당자 기재)

2. 응시직종 : ‘청원경찰’ 기재되어 있음

3. 성명 : 응시자 한글 성명 정자로 기재

4. 공인무도단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그 외 자격증: 해당자 필수 기재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 자격증명 ·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

-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작성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접수 미반영)

5. 경력사항: 빠짐없이 기재하되 허위기재 또는 고의누락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경력사항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함

6.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조절 및 표나누기 등을 하여 1장으로 작성

## 자 기 소 개 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신지, 성명,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작성요령)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무수행 계획 등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분량 A4용지 2매 이내(초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휴먼명조 14pt, 줄간격 150% 기준,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변경 가능)

### (지원동기)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경력자의 경우 근무기관에서 경험·성과 등으로 상세히 기술

- 
- 

### (직무수행 계획)      ※ 입사 후 계획, 지원분야 업무수행 시 기여할 수 있는 측면 등으로 기술

- 
- 

### (생활신조 및 가치관 등)

- 
- 

2023. . .

응시자 성명: (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청원경찰 신규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임용 등 인사관리에 사용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경력사항, 우대(자격)사항, 가점사항 등  * 주민등록번호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임용 및 채용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집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관련정보 확인 불가로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23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인/서명)

## 공정채용 확인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2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불공정 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해당여부	
	있음	없음
1. 본인은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본인의 친인척이 보건복지부 혹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퇴직 포함)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과 ( )촌 이내이며, ( )에 근무하는(했던) (성명: )입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기 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응시자 성명:

(인/서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귀하

## 【별지 6】

**서류전형 채점 기준표**

구분	분야	세부 평가기준	채점기준	배점	확인 서류
정성 평가 (50%)	자기 소개서 (10점)	- 청원경찰로서의 자세 - 조직융화력 - 봉사정신 및 친절성 - 예의, 성실함 및 책임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자기소개서를 통해 채용분야와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정량 평가 (50%)	공인무도단증(3점)		5단 이상 4단 3단 2단 1단	3 2.5 2 1.5 1	- 공인무도단증 등 확인 ※ 인정단체에서 취득한 단증에 한함
			일반경비지도사(2점)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급(2점)	응급구조사 1급	- 자격증 등 확인
				응급구조사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점) ※ 2019. 1. 1. 이후 실시된 시험		개편 전 고급(1~2급)	개편 후 심화(1~2급)	- 인증서 확인
			중급(3~4급)	심화(3급)~ 기본(4급)	
			초급(5~6급)	기본(5~6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1.5	
정보기술, 사무분야(1.5점)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 1급)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 1급)	1 0.5	- 자격증 등 확인
			정보보안산업기사		
합 계		20점			
가산점	법정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2	- 증명서 확인
			서류전형 만점의 5%	1	
	사회 형평 가점 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10%	2	- 증명서 확인
		그 외	서류전형 만점의 5%	1	

【별지 7】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75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2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